

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7. 8(목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6월 3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1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(2004. 7. 7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개인의 자아실현, 사회적 통합 증진,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,
- 언제, 어디서,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,
- 지역사회 모든 평생교육시설과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,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지역시민에 의한, 시민을 위한,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
-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주요 수행사업(안 제3조)
 -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개발, 연구, 기관 및 단체간의 지원사업, 시민 교육계획의 수립 및 홍보, 정보제공 등

- 평생학습정보센터의 관리·운영 방안(안 제4조)
 - 관리·운영을 시장이 하되,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 가능
- 이천시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
 - 평생학습도시의 건설 촉진과 평생학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
 - 당연직위원 : 시장, 교육장, 시청 업무관련 담당국장·과장, 교육청 학무과장
 - 위촉직위원 : 시의원,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의 장, 5급이상의 공무원 등
 - 위원장을 시장, 부위원장을 교육장으로 당연직화 함.
- 수당 등의 지급(안 제11조)
 -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실비수당 지급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해수)

-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 설치및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, 평생교육법 제 9조 및 제14조에 의거,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,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
- 20만 이천 시민이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도록 하여,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